

보도일시	2021. 11. 23.(화) 조간 *인터넷 2021. 11. 22.(월) 12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	과 장 신호철 사무관 허진영	044-202-7918 044-202-7927
	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	부 장 박흥열 차 장 김경화	052-704-7201 052-704-720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'50만명' 가입

-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안착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, '특고 종사자')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(11.10. 기준) 만에 50만명(503,218명,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*)을 넘었다고 밝혔다.

* 방과후학교 강사는 73,881명(누계기준)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으나,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 예정으로 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음

○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,

* (21.7월 적용: 12개)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, 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학교), 건설기계조종사, 화물차주

○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'구직급여*'와 '출산전후급여**'를 받을 수 있다.

* (구직급여 수급요건)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, 비자발적 이직(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), 취업하지 못한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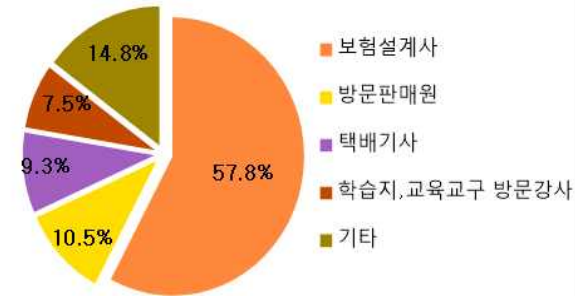
** (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) 출산(유·사산)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, 소정 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, 출산(유·사산)일 12개월 이내 신청

< **특고 고용보험 가입 「중사자」 현황**(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기준, 11.10.) >

- ‘직종별’로는 보험설계사가 57.8%(290,719명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

- 방문판매원 10.5%(53,062명), 택배기사 9.3%(46,946명), 학습지방문강사 7.5%(37,800명) 순으로 나타났다.

직종별 피보험자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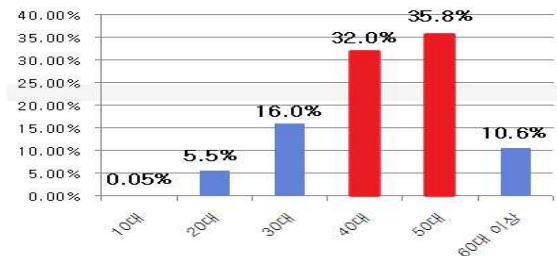
- ‘지역별’로는 서울지역이 74.4%(374,056명), 경기지역이 9.4%(47,057명), 부산지역이 3.2%(16,202명) 등으로 나타났는데,

-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.2%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.

- ‘연령별’로는 50대(35.8%)·40대(32.0%)가 가장 많고,

- 30대(16.0%), 60대 이상(10.6%), 20대(5.5%), 10대(0.05%) 순으로 나타났다.

연령별 피보험자 비중



- ‘성별’로 보면 여성이 326,198명(64.8%)으로 남성(177,020명, 35.2%)보다 많으며,

- 이는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< **특고 고용보험 가입 「사업장」 현황**(보험관계 성립신고 누계 기준, 11.10.) >

-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,830개소이며,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,017개소(59.8%)이다.

*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장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확정 예정으로 위 사업장 수에 포함하지 않았음

- ‘규모별’로는 5인 미만 7,764개소(40.7%), 10인 이상~30인 미만 6,407개소(33.6%), 5인 이상~10인 미만 3,859개소(20.2%)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(94.4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계획 >

□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

-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,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「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」 누리집(total.comwel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11월은 줌(ZOOM)형식의 온라인 강의를 8회 제공(11.16.(화) ~ 12.2.(목))

□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'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'를 「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」 누리집에서 운영하며,

-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자진하여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

-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,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,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.

□ 또한 '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(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)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(집중홍보기간 '21.12월~'22.1월)와 연계하여,

-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,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.

* (두루누리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·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 종사자와 그 사업주의 보험료 80% 지원

(보험사무대행)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 신청 가능하며, 보험사무대행기관에는 신고 실적 등에 비례하여 지원(성립신고 대행 4만원 등)

-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“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,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”,
 - 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‘특고 고용보험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(서울☎02-6946-0500, 부산☎051-790-0300, 경인☎032-712-0500, 대전☎042-718-0600)와 콜센터(☎1588-0075)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허진영 사무관(☎044-202-79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



보험설계사, 교육교구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건설기계조종사

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

사업장 가입

*사업주 신고

①사업장 성립신고

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
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

②사업장 변경신고

상호, 사업주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
14일 이내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

③사업장 소멸신고

폐업, 사업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
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

피보험자격 신고

*사업주 신고

①피보험자격 취득신고

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
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
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
*단기노무제공자(계약기간 1개월미만)는
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

②피보험자격 변경, 정정

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
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

③피보험자격 상실신고

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
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
*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
정산 및 납부

보험료 산정 및 부과

①월보수액 통보

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
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

②보험료 산정, 부과, 고지

(보험료 산정)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× 보험료율
보험료 부과(매월 15~18일) 및 고지(매월 22일경)

③보험료 납부

매월 월별보험료 납부(매월 10일까지)
*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

부과 과정(예시)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→ 8월 31일까지 월보수 신고 (7월분)
→ 9.15~18일경 (7월분) 보험료 산정, 부과 → 9.22일경 보험료 고지 (10.10.납기)

문의는?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**1588-0075**

신고는? 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, 고용산재토털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에서 작성·제출 가능

❖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*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

*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

① (사업장 성립신고) 특고 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

*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

② (피보험자격 신고)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개시일·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신고

* 단기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

-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

* 「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」(total.comwel.or.kr)에서 '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' 운영

③ (월보수액* 신고)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

*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·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

④ (보험료 납부)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월보수액*의 0.7%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,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

- (보험료 지원)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(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)

*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고 종사자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